

『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기획국장 양 기 철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, 제4조)
- 근로자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근로복지시설 설치·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○ 본 「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」 은,

- 근로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근거한 고충상담 사업지원, 불합리한 차별 방지, 인권보호 교육·홍보 등 올바른 근로자 복지문화 정착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 및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노동권의 확보와 향후 노동정책 및 관련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